

충청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# 충청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이옥규 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1년 6월 30일
- 회부일자 : 2021년 7월 2일

3. 제안이유

-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이 시행됨에 따라,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도(道)의 조례로 정하여,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시의 신청방법 등과 경미한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2조~제3조)
-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시 정비사업 전환 동의율 규정(안 제4조)
- 재정비촉진계획의 포함 내용 및 변경 규정(안 제5조~제6조)
-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·조정하는 총괄계획가의 위촉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7조)
-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설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, 용적률, 건축물의 높이 및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
- 재정비촉진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상의 자문과 주민의견 조정을 위한 사업협의회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(안 제9조)
-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(안 제10조~제11조)
-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학교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기준, 납부방법, 이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2조)
-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기반시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를 대신해 먼저 설치한 경우에 사업시행자에게 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징수하는 기간, 이자율, 납부방법 등을 정함(안 제13조)
- 세입자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규정(안 제16조)

## 5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「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(2020.12.22. 제정)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, 기반시설 확충, 도시기능 회복 등 각종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령의 취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. 끝.